

## ‘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’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### 1. 공급개요

■ 공급위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-1번지 일원

■ 공급규모 : 지하4층 ~ 지상 최고 35층, 24개동, 공동주택 총 2,568세대 중 일반분양 735세대(기관추천특별공급 72세대 포함)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세대수 (\*괄호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49    | 59A    | 59B      | 합 계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일반<br>(기관추천)<br>특별공급 | 국가유공자         |       | -      | 6 (30)   | 4 (20)   | 10 (20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장기복무 재대군인     |       | 1 (5)  | 5 (25)   | 4 (20)   | 10 (20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|       | -      | 6 (30)   | 4 (20)   | 10 (20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 근로자      |       | -      | 6 (30)   | 5 (25)   | 11 (55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          | 인천광역시 | 1 (5)  | 5 (25)   | 5 (25)   | 11 (55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| 1 (5)  | 5 (25)   | 4 (20)   | 10 (20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경기도   | 1 (5)  | 5 (25)   | 4 (20)   | 10 (20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|       | 4 (20) | 38 (190) | 30 (150) | 72 (360) |

### 2. 신청자격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중소기업 근로자 등)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**무주택 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원)**이며 특별공급 대상으로 **해당 기관장의 추천**을 받은 자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철거민은 제외)

-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**6개월이 경과**하고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**6개월이 경과**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㎡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**6개월이 경과**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※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#별표2.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)

| 구분           |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|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| 그 밖의 광역시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전용면적 85㎡ 이하  | 200만원             | 300만원       | 250만원    |
| 전용면적 102㎡ 이하 | 300만원             | 600만원       | 400만원    |
| 전용면적 135㎡ 이하 | 400만원             | 1,000만원     | 700만원    |
| 모든면적         | 500만원             | 1,500만원     | 1,000만원  |

### 3. 당첨자 선정방법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**관계기관의 장이 선정**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.

■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**해당기관에 신청**하여야 함.

■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**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**. 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]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(한국부동산원)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.

#### 4. 공급일정(예정)

| 모집공고일(예정)  | 모델하우스 OPEN | 특별공급 신청일   | 당첨자 발표일    | 계약일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1월 20일(목) | 11월 28일(금) | 12월 01일(월) | 12월 09일(화) | 12월 22일(월) ~<br>12월 24일(수) |

※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으로 인·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3. 사업지 위치 및 모델하우스 운영안내

■ 사업지 위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-1번지 일원



#### ■ 견본주택 운영안내

■ 견본주택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-1

■ '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'은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,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,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■ 홈페이지

<https://forena-incheon.com/>

■ 문의전화

**1551-1491**

※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.첨부2

‘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’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대장

■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추천 양식 예시 및 유의사항

■ 대상자 : 총 \_\_\_\_\_ 명 (확정 : 00명, 예비 : 00명) \_ 추천양식은 아래 예시 참조

| 기관추천<br>특별공급종류 | 추천기관명             | 주택형 |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| 추천구분<br>(확정 or 예비) | 연락처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장애인 특별공급       | 서울시청<br>장애인 자립지원과 | 59A | XXX | 000000-0000000 | 확정                 | 010-0000-0000 |
| 장애인 특별공급       | 서울시청<br>장애인 자립지원과 | 59A | XXX | 000000-0000000 | 확정                 | 010-0000-0000 |
| 장애인 특별공급       | 서울시청<br>장애인 자립지원과 | 59A | XXX | 000000-0000000 | 확정                 | 010-0000-0000 |
| 장애인 특별공급       | 서울시청<br>장애인 자립지원과 | 59A | XXX | 000000-0000000 | 예비                 | 010-0000-0000 |
| 장애인 특별공급       | 서울시청<br>장애인 자립지원과 | 59A | XXX | 000000-0000000 | 예비                 | 010-0000-0000 |
| 장애인 특별공급       | 서울시청<br>장애인 자립지원과 | 59A | XXX | 000000-0000000 | 예비                 | 010-0000-0000 |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종류 및 확정대상자(당첨자)와 예비대상자를 필히 구분하여 표시

◎ 작성순서 : 특별공급 종류 → 주택형 → 주민등록번호 → 확정자 모두 작성 후 예비자 작성

※ 각 타입별 확정 및 예비인원을 선정하여 회신

※ 예비대상자는 타입별 공급대상의 500%를 선정(소수점 반올림)

※ 2025.11.25.(화) 12시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, 기간 내 미 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